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5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0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년 10월 17일, 정진술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다. 상정일자: 제31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2년 12월 2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진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,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, 특히 각종 쓰레기의 무단 투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시,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나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피재황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, 재활용,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시,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- 현행 조례 제10조(시민참여)는 폐기물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, 시민들의 참여 확산에 있어 시민홍보와 교육 또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.

〈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〉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시민참여)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10조(시민참여) ①----- ----- ----- 하며, <u>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시민참여) ①시장은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시민참여) ①----- ----- ----- -----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<u>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